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상담·교육 실시 기관에 국가유공자등 단체 추가 〉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294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상담·교육 실시 기관에 국가유공자등 단체 추가	2

I. 개요

1.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29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16.

(3) 회 부 일 : 2025. 12.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은 주로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에서 이들을 우선적인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상담·교육 실시 기관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의 의미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상담·교육 실시 기관에 국가유공자등 단체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실시 기관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①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단체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6조¹⁾에 따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관에는 ①「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②「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③그 밖에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음.

-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고령화, 1인 가구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대하여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고독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의 의미를 제고하려는 것임.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기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단체³⁾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
4. **광복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각각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5. **4·19민주혁명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4·19혁명희생자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7. **4·19혁명공로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8.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9.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3) p.7 참고

- 국가보훈부의 자료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의 약 80%가 65세 이상 고령자이고 독거노인비율 또한 일반 국민(22.1%⁴⁾)보다 높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등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보훈대상자의 고령 및 독거노인비율 >

구분	인원(명)	비율(%)
전체 보훈대상자*	572,992	100.0
보훈대상자 중 1인가구	159,415	27.8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463,348	80.9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1인가구 (독거노인)	133,718	28.8

* 보훈대상자 본인 및 전순위 유족. (자료: 국가보훈부, 25.3 기준)

- 또한, 법 제16조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사회적고립대응 단계별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고,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사회적 고립 문제를 별도로 다르게 접근할 필요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회적고립대응 단계별 교육과정>

구분	기본과정	심화과정	사례관리역량과정
교육 내용	· 고독사 예방 사업의 이해 및 업무에의 적용 · 고독사 예방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본 시사점 · 사회적 고립 예방 사업 가이드 · 사회적 고립 가구의 돌봄 안전망 구축 사례 · 사회적 고립 예방 지원 사례	· 고립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고립 현황 · 사회적 고립 지원을 위한 정책 현황 · 고립대상자의 특성과 이해 소통 요령 · 사회적 고립에 놓인 대상자 지원 사례 ·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 사례 · 고립에서 벗어난 당사자의 이야기 · 관련 영상 감상 및 토의	· 사회적 고립 예방 법제도정책 대응의 현재와 미래 · 고독사 예방 사업 마주하기(사업 기획의 이해) · 고독사 사업 기획 기초, 실습 적용 및 전문가 환류 · 고독사 예방 사업의 지역 유형별 사례 학습 · 사회적 고립 당사자 사례 공유

자료: 보건복지부

4) 국가데이터처, 「장래가구추계2022」, 「장래인구추계2022」, 2024
(독거노인비율: (65세 이상 1인가구 수 / 65세 이상 인구) x 100)

□ 다만,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 제5조⁵⁾에 따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른 보훈단체를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 기관으로 지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문 의 처

02)6788-5497

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른 보훈단체 현황
-------------	-------------------------------

☐ **법정단체 : 개별법에 의해 설립** (9개 단체, 100개 지부, 1,066개 지회)

(‘25. 11월말 현재)

단 체 명	대 표	회원자격 인원 (명)	설 립 목 적 (설립일)	조 직 현 황		설립 근거
				지 부 (시·도)	지 회 (시·군·구)	
광 복 회	이종찬	9,043	■ 민족정기 선양 (‘73. 03. 03.)	17	137	국가 유공자 단체 설립법
상 이 군 경 회	유을상	104,311	■ 국가발전, 자활 (‘63. 08. 12.)	17	240	
전 물 군 경 유 족 회	김영수	100,962	■ 전몰장병 유지계승 (‘63. 08. 12.)	17	231	
전물군경미망인회	박건용	59,246	■ 순국자 유지계승 (‘63. 08. 12.)	17	230	
재 일 학 도 의 용 군 동 지 회	박운욱	1	■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 (‘89. 01. 01.)	1	-	
무 공 수 훈 자 회	김정규	55,172	■ 국가·사회 기여 (‘91. 12. 27.)	17	228	
4·19 민주혁명회	오경섭	122	■ 4.19이념 계승 (‘73. 03. 03.)	6	-	
4·19 혁명유족회	한성기	255	■ 4.19이념 계승 (‘73. 03. 03.)	4	-	
4·19혁명공로자회	문정수	228	■ 4.19이념 계승 (‘01. 09. 17.)	4	-	